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08
----------	-------

발의연월일 : 2026. 6. 22.

발 의 자 : 임오경 · 김준혁 · 전용기
조계원 · 이개호 · 황명선
박 정 · 이기현 · 윤준병
진성준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뉴미디어 영상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었으나, 용어 정비를 제외한 실질적 내용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음.

오늘날 모바일 기기 발달 및 온라인 환경의 변화로 영상물의 기획 · 제작 · 유통 · 소비 방식이 현격히 변화되어,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영화, 방송영상물, 실시간 영상 등의 영상콘텐츠들이 종합적으로 유통되며 기획 · 제작 등 단계에서도 콘텐츠의 영역이 통합되는 양상을 띠고 있으나, 이러한 영상콘텐츠들은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거나 법 ·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 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및 영상콘텐츠산업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을 재정비하여 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함으로써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에 한류 영상콘텐츠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은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상콘텐츠산업의 질적 향상을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며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영화상영관 등을 통해 유통되는 ‘영화’와 방송채널을 중심으로 제작·유통되는 ‘방송영상콘텐츠’, 최근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활발히 제작·유통되는 ‘온라인영상콘텐츠’, 매체 구분없이 활발히 유통되는 ‘애니메이션’을 포괄하는 ‘영상콘텐츠’의 개념을 재정립함(안 제2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

립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영상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영상콘텐츠사업자의 기획·제작 지원, 파생콘텐츠의 기획·제작 지원, 영상콘텐츠 전문인력의 양성, 지식재산권·창작활동의 보호, 영상콘텐츠의 연구개발, 투자·금융기반의 구축, 국제협력·해외진출의 지원, 다중언어 제작 지원 및 영상콘텐츠산업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영상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영상콘텐츠의 합리적 유통을 위해 영상콘텐츠사업자가 지켜야 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온라인영상콘텐츠의 건전한 거래를 위하여 온라인영상콘텐츠제공업자에게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사. 정부는 국민이 영상콘텐츠를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국민의 영상콘텐츠 수용능력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영상콘텐츠사업자의 영업신고·승계 규정과 폐업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수수료·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영상진흥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상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콘텐츠 문화 및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콘텐츠”란 연속적인 영상 형태로 이루어진 유형·무형의 창작물을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포함한다.
2. “영화”란 영화상영관 등을 통하여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3. “방송영상콘텐츠”란 「방송법」 제2조제15호의 방송편성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4. “온라인영상콘텐츠”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가공·처리된 영상콘텐츠로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목적으로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을 내재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나.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가 제작한 보도물

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5. “애니메이션”이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스스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피사체를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가공함으로써 움직이는 이미지로 창출하는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6. “영상콘텐츠산업”이란 영상콘텐츠의 기획, 개발, 제작, 활용, 유통, 배급, 수출, 수입, 상영, 시청제공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상콘텐츠제작업

나. 영상콘텐츠유통배급업

다. 영상콘텐츠시청제공업

7. “영상콘텐츠제작업자”란 영상콘텐츠를 기획, 개발,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8. “영상콘텐츠유통배급업자”란 영상콘텐츠를 유통, 배급, 수출, 수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9. “영상콘텐츠시청제공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시청에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영화상영업자: 영화상영관 또는 비상설 상영장에서 영화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자

나. 온라인영상콘텐츠시청제공업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온라인영상콘텐츠 등을 시청에 제공하는 자

10. “영상콘텐츠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영상콘텐츠산업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1. 영상콘텐츠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할 것
2.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되는 영상콘텐츠 제작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이 양질의 영상콘텐츠를 향유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것
3. 영상콘텐츠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통을 통하여 영상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4. 다양한 영상콘텐츠 관련 사업을 창출하고, 융합적 산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영상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5. 영상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국내외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6. 영상콘텐츠 문화의 확산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포용하고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
7. 영상콘텐츠에 기반한 한류(韓流)를 통하여 전세계와 공감하고 교류하는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영상콘텐츠문화와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상콘텐츠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영상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영상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영상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4. 영상콘텐츠창작자·사업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영상콘텐츠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관객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영상콘텐츠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
 9. 영상콘텐츠 관련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영상콘텐츠 정책에
관한 사항
 10.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11.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

제6조(영상콘텐츠사업자의 기획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융자·투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 영상콘텐츠의 기획·개발

2.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영상콘텐츠의 기획·개발
3. 영상콘텐츠사업자의 전문역량 강화
4. 영상콘텐츠의 기획·개발을 위한 기자재 대여 및 시설 임대
5. 영상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제7조(영상콘텐츠사업자의 제작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융자·투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성·공공성·예술성이 있는 영상콘텐츠의 제작
2.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영상콘텐츠의 제작
3. 영상콘텐츠의 국내 및 국외 공동 제작
4.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영상콘텐츠의 제작
5. 그 밖에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2차적저작물의 기획 및 제작 지원) 정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산업으로부터 파생되거나 재가공한 2차적 저작물을 영상콘텐츠사업자가 원활하게 기획·제작·유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영상콘텐츠의 전문인력 양성 등) ① 정부는 영상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영상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에 관한 산학협력을 장려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콘텐츠 관련 전문인

력의 양성 및 재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재산권 및 창작활동의 보호)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른 영상콘텐츠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등 영상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영상콘텐츠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영상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에 있어서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재창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및 창작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영상콘텐츠의 연구·개발 등) ① 정부는 영상콘텐츠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영상콘텐츠에 관한 기획·제작·연구를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투자 및 금융기반 구축) 정부는 영상콘텐츠산업의 투자 및 금융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치평가, 문화산업 보증, 사업단위 자금조달 등의 영상콘텐츠의 고유성에 기반한 투자·금융방식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영상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영상콘텐츠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외국인의 투자 유치 활성화
3. 국제 시상식·견본시장·전시회·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 영상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영상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
6. 영상콘텐츠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
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다중언어 제작 지원) 정부는 해외 영상콘텐츠 이용자의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다중언어 제작 기술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해외 공동제작 활성화) 정부는 영상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 및 공동제작 결과물의 국내외 유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공적개발원조) ①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상콘텐츠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및 기술 전수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영상콘텐츠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및 기술 전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영상콘텐츠의 보존 등) ① 정부는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상콘텐츠를 수집·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영상콘텐츠의 수집·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상콘텐츠산업 유통환경의 현황 분석
2. 영상콘텐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
3.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영상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제20조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5. 그 밖에 영상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9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정보

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상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콘텐츠사업자는 영상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작권의 양도를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기획·제작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가를 정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기획·제작 방향의 변경이나 기획·제작 인력의 지정·교체 등을 요구하는 행위

4. 영상콘텐츠의 공급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부당하게 계약서의 재작성, 특약 체결, 공적 자금의 지원 등을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된 대가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감액·미지급하는 행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상콘텐츠사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과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영상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정부는 영상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콘텐츠 관련 정보 제공 및 이용자 교육
2. 영상콘텐츠사업자 대상의 이용자 보호 교육
3.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4.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시행
5.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제22조(이용자보호지침의 사용 권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영상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영상콘텐츠시청제공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온

라인영상콘텐츠시청제공업자에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보호지침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분쟁의 조정) 다음 각 호의 분쟁에 관하여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에 관한 영상콘텐츠사업자 간 분쟁
2. 영상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영상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

제24조(영상콘텐츠 이용의 격차 해소) 정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영상콘텐츠에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이용 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영상콘텐츠 수용능력 증진) ① 정부는 모든 국민의 영상콘텐츠 수용능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영상콘텐츠 수용능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2. 전문인력의 양성
3. 조사 및 연구
4. 전문기관 또는 단체 지원
5. 영상콘텐츠 수용능력 증진 관련 국제협력

6. 그 밖에 영상콘텐츠 수용능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영업의 신고 등

제26조(영상콘텐츠사업자의 신고 등) ① 영상콘텐츠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콘텐츠사업자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온라인영상콘텐츠를 시청에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제공사업자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온라인영상콘텐츠 시청제공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상콘텐츠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6.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영상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방법, 신고증의 교부·재교부·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신고의 의제) 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영화업자와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비디오물제작업자 및 비디오물배급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상콘텐츠사업자의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애니메이션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상콘텐츠사업자의 신

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이 법에 따른 영상콘텐츠사업자의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영업의 승계)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상콘텐츠사업자가 그营业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종전의 영상콘텐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등은 그 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종전의 영상콘텐츠사업자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29조제1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여 신고사항이 말소된 영상콘텐츠사업자가 1년 이내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영상콘텐츠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상콘텐츠사업자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9조(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상콘텐츠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30조(행정처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영상콘텐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 명령을 한 경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28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어 영상콘텐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상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제30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의 유효기간 동안 그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②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상콘텐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30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의 유효기간 동안 그 영상콘텐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상콘텐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32조(수수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콘텐츠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콘텐츠문화 및 영상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과태료)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이나 영업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상콘텐츠사업자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방송영상물”을 “방송영상콘텐츠”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호 다목 중 “방송영상물”을 각각 “방송영상콘텐츠”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방송영상물”을 “방송영상콘텐츠”로 한다.

제31조제7항제11호 중 “방송영상물”을 “방송영상콘텐츠”로 한다.